

아동친화도 지표를 통해서 본 O시 아동친화도시 구축 방향성*

유희정** · 권순정*** · 강순원**** · 변종석*****

요약

본 연구는 O시에서 아동권리를 온전히 이행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요구되는 O시의 아동친화도시 기반구축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근거하여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지표설문지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O시 미취학, 아동, 청소년 학부모, 아동, 청소년, 아동권리옹호가 6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O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참여권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O시는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아동 당사자 주위에 입각한 참여권 보장이 정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방향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영향평가제도가 정례화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지표, 아동영향평가

* 본 연구는 오산시 용역으로 연구한 '아동친화도시 지표를 통해서 본 오산시 아동영향평가의 방향'보고서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부교수, jjhj87@hanmail.net

*** 서울대학교 외래교수, www.ssolve0123@hotmail.com

****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kangsw@hs.ac.kr

*****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jsbyun@hs.ac.kr

I. 머리말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인간정주회의(UN Habitat II Conference)¹⁾에서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 하고 아동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그 핵심 요건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좋은 정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UNICEF, 1996). 이어 1997년 유니세프를 아동친화도시 운동(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의 공식 파트너로 지정하였으며 2002년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유엔 아동특별총회를 통해 아동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과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지역사회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이나 아동실종 방지 및 건전한 아동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이를 인증하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장하며 주변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발달을 이룬다. 아

1) 제1차 유엔주거회의(Habitat I)에서 인간의 정주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차원에서 유엔인간정주센터를 창설하고 2차 회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하였다. 보통 주택, 환경, 교통, 도시개발, 빈곤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선언문을 채택하여 각국이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의 활동을 고려하여 조성된 도시에서 아동의 경험은 환경과 반응하면서 사회성, 독립심 등 인성을 형성하게 되고, 독립적 이동성을 높이면서 신체적 활동량을 증가시키며 인지 수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hurchman, 2003; Clark, et al., 2007). 또한 행복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책임감을 균형 있게 키울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시민적 원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보장해주는 것은 아동친화도시(CFC)가 지향하는 주요한 과정이다.

한국의 경우, 15세와 29세 사이 아동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9.4%만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행복지수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동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들의 발달적 특성과 요구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은 아동의 발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동의 인식, 요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서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환경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강순원 외, 201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아동이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여건을 시급히 조성해야 하며 아동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개입을 통한 해결이 매우 필요한 수준이다(김영한 외, 2014).

그리하여 한국은 2013년 최초의 유니세프 인증 성북구 아동친화도시를 시발점으로 각 지역에서 아동친화도시 원칙을 준수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 위

치한 0시 역시 2014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 혹은 새로운 지원방식의 형태로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고 4대 아동권리에 맞춰 부서들의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강순원 외(2016)가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호아동을 위한 환경이 부족하여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의 부분이 간과되고 있으며 아동인권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가 미비하며 안전과 관련된 도시설비 구축, 구 도시와 신도시의 조화 등 0시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구성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0시가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동인권협약에서 제시하는 균형 잡힌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역사회의 환경 뿐 만 아니라, 범죄, 폭력, 비행 등 다양한 사회의 위험요소와 더불어 사회 보장, 복지제도, 국가이념 등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틀에서 아동의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때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시정 결정과정에서 아동영향이 중요한 절차로 들어가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유니세프에서 개발한 아동친화도 지표에 따른 설문 결과를 평가자에 따른 영역별로 조사를 아동 4대 권리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0시의 아동친화도시 구축방향을 전망해 보고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규명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니세프가 개발한 아동친화도 지표에 따른 설문조사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근거하여 어떻게 해석되는가?

둘째, 아동친화도시 설문조사결과가 아동영향평가 전달체계 구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셋째, O시가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II. 아동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 지표

1. 아동친화도시 이해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가족이 해체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회적 보호를 온전히 받아 발달의 장애를 겪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의 온전한 발달을 위해서도 모든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부여되어야 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유엔헌장에서 선언된 인도주의적 이상이다. 모든 아동이 유엔이 지향하는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며(보건복지부, 2011), 이러한 협약 정신이 사회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바로 유니세프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CFC) 인증사업이다. 유니세프(1996, 2001)는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일반적으로 성인과는 다른 아동의 발달과 행태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적합하게 조성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라 하였다. 또한 아동만의 특별한 발달욕구를 인정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야 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시로서, 살고 있는 도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리,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거리를 안전하게 거닐 권리, 친구를 만나 놀 권리,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 문화, 사회행사에 참여할 권리, 차별 없이 모든 서비스를 누릴 권리 등이 실현되는 도시로 궁극적으로는 아동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된 도시로 이해할 수 있다(박금식, 2014).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이 가진 역량은 최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 틀을 만들 수 있으며 아동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통해 빈곤 아동과 위기에 처한 아동의 삶의 질도 함께 높일 수 있음을 기대하게 된다. 또한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 위험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미래사회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삶과 환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안전하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아동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도시인 '아동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 인권기반의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 가치, 인식을 존중하는 도시', '아동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 '아동권리 및 보장 증진을 위한 노력'이라는 슬로건아래 구성되어 가고 있다(UNICEF, 1996, 2001). 그러므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있어서 인권이해는 필수이다. '인권'은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인 권리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이다. 따라서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동에게도 해당된다. 아동인권의 법제화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선언은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있어서 특수한 분야의 단편적인 내용만 담고 있고 그 자체로는 법규 제력이 없는 비형식적 성격을 띠고 있어 아동인권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미를 두지 못한다. 아동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은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만장일치 통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아동인권을 아동 기본권의 주체성으로 간주하여 지구촌 아동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라는 데에 의의를 지니며,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이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폭력,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아동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

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4대 기본권의 내용 및 관련조항은 <표 1>과 같다.

아동은 기본적 주체성으로 보호받을 존재인 동시에 자율적인 존재도 인정받아야 한다. 이제 아동을 보는 시각은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 받아야

<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기본권	내용	관련조항
생존권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영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제 6, 7, 8, 9, 19, 20, 21, 23, 24, 26, 27, 30, 32, 33, 34, 35, 38조
보호권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등	제 2, 7, 10, 11, 16, 19, 20, 21, 23, 25, 32, 33, 34, 35, 36, 37, 39, 40조
발달권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제 5, 6, 9, 10, 11, 12, 13, 14, 15, 17, 24, 28, 29, 31조
참여권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 12, 13, 15, 17, 18 조

출처: www.unicef.or.kr 재구성함.

하는 존재'로 옮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자원과 정보가 효율적으로 아동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 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가야 한다 (Morrow, 1999).

아동의 권리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이루어진 국가는 2016년 기준으로 1300여개가 된다(강순원 외, 2016).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성북구는 아동의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성북구청, 2013, 2014), 우리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일본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아동의 의견과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동권리를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였다(Isami kinoshita, 2014). 이상의 사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의 개념과 의의에 입각하여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 원칙을 최대한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함은 자명한 사실임을 시사한다.

3. 아동친화도 지표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아동지표는 크게 유니세프와 유네스코 그리고 유니세프 유럽연합에서 개발된 지표가 있다. 그 중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이다. 이는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아동친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개발되었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 지표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아동의 상

황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활용의 목적이 있으며(UNICEF, 2010), 평가대상 도시의 친화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계획을 반영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는 크게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진단할 수 있는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Tool' 지표와 지자체의 행정조직, 예산, 아동권리옹호시스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Child Friendly City Governance Assessment Tool'로 구성되어 있다.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Tool은 일·놀이·여가 영역 9개, 지역사회 유대 관계 영역 10개, 안전과 보호 영역 15개, 건강과 사회 서비스 영역 12개, 교육 자원 영역 28개, 주거 환경 영역 10개 등 총 6개 영역 총 8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Child Friendly City Governance Assessment Tool은 정부의 아동정책 이행과 특별한 분야 내 아동권리 보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아동정책 이행은 지방정부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 결정, 정부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행동 조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 아동·청소년에 대한 데이터, 일반인과 전문가의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을 위한 옹호 활동 등의 하위 영역으로 20개 지표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수 분야의 아동권리보호는 사회서비스 및 보호, 청소년 사법 교육, 놀이·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교통·환경·보건, 공중위생, 도시계획 및 공공업무, 비상대책 및 대응을 하위영역으로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네스코 아동친화도 지표는 선진국 뿐 만 아

나라 개발도상국까지 10-15세 아동에게 인터뷰를 하여 지역사회의 긍정적·부정적 요소와 중요한 구성요소를 탐색하였으며(Chawla, 2002), 인터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관계자와 정책입안자 등과 협력적 관계를 맺고 아동의 성장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Chawla, 2002; Driskell, 2002). 이는 아동이 참여하면서 아동의 시각에서 지역사회 환경을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양적인 방법이 아닌 질적인 방법으로 요구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아동친화평가지표에 의존하기 보다는 각 지역사회의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대상에 따라 보다 적합한 척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나라별 아동친화평가지표는 다양하다. 프랑스 경우는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교육, 건강, 보호, 문화, 여가의 양적·질적 향상, 아동·청소년의 참여 독려와 의견에 기울이기, 국제교류 활동과 협력 강화, 아동권리홍보, 아동을 위한 혁신적 실천방안 마련, 다양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선정하였고, 스페인의 경우 참여의 권리, 건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좋은 환경을 즐길 권리, 여가와 자유 시간을 즐길 권리, 가족 안에서 성장할 권리, 다문화에 대한 관용적이며 포용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 다양한 부처 간 협력방안 강화를 선정하였다. 스위스 경우 도시환경의 특성, 지역과 지역 간 협력, 발전전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 조정, 영·유아보육, 초·중·고등교육, 직업교육, 방과 후 돌봄 기관, 아동·청소년보호, 건강, 레저, 주거환경개선, 교통 환경개선을 선정하였다.

국내에서도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된 아동 지표가 있지만 정작 아동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방법론적 시도는 없거나, 조사된 아동의 생각과 의견이 정작 아동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은 지표들이다(이옥, 2012).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홍승애(2013)는 박사학위논문에서 국내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친화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한 것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친화도 지표를 번역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Ⅲ. 0시 아동친화도 지표에 따른 조사 분석

1. 연구방법

0시의 아동친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아동친화도시 지표에 대한 친화수준을 진단하는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아동친화도시 평가의 설문 대상은 미취학아동 부모, 어린이 부모, 청소년 부모, 아동권리옹호가와 응답이 가능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 모두 6개 그룹이다. 6그룹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율은 96%이다. 주요 설문내용은 6개 아동권리 주제를 중심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나의 사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배경과 설문지 회수율은 <표 2>와 같다.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보건과 사회서비스(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어린이와 청소년

〈표 2〉 설문대상의 일반적 배경과 회수율

대상	하위집단	배부 개수	배부장소	회수 개수	회수율 (%)
미취학아동 부모	0~2세 3~7세	150	가정,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총 15곳	138	92
어린이	본인 저학년 고학년	150	초등학교 총 4곳	145	97
	부모 저학년 고학년	100	설문대상 학생의 학부모	94	94
청소년	본인 저학년 고학년	150	중, 고등학교 총 4곳	147	98
	부모 저학년 고학년	100	설문대상 학생의 학부모	99	99
권리옹호가		50	아동관련 전문가	49	98
총계		700		672	96

은 교육) 및 가정환경(어린이와 청소년은 나의 사생활)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각 영역마다 최소 4개에서 최대 23개의 개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는 평가대상별로 전체문항에 차이가 있는데 총 51개(어린이)부터 75개(아동권리 옹호가)이다(<표 3> 참조)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설문은 개별 문항마다 3점 척도(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로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듯이 평가대상별로 문항 수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별 영역간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할 필요가 있어서 매우 그렇다는 +1, 가끔 그렇다는 +0.5, 전혀 아니라는 -1로 부여하여 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성취도가 (+)이면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음을 의

미한다. 평가대상 내에서 하위영역을 비교하거나 영역별로 평가를 비교할 때 영역 및 평가대상마다 문항수가 다르므로 표준화 성취율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표 3〉 조사대상별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설문영역의 영역별 문항 수

대상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전체
미취학 부모	7	4	5	11	17	9	53
어린이 부모	6	6	14	9	21	9	65
청소년 부모	6	6	15	9	23	9	68
아동권리옹호가	7	6	18	12	23	9	75

대상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나의 사생활				전체	
						소계	우리집	안전과 보호	건강 학교		
어린이	6	5	7	4	18	11	4	6	-	1	51
청소년	6	6	7	4	20	16	5	8	2	1	59

2. 평가대상별 영역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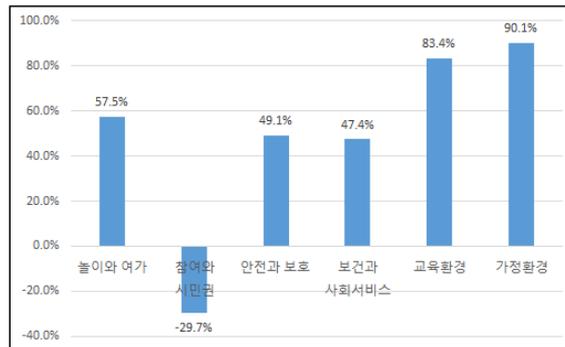
1) 미취학아동부모

미취학 아동 부모대상으로 53개 문항을 결합한 종합의견을 보면, 0시 아동친화도시 수준 '매우 그렇다'라고 보는 비율은 58.2%로 나타났다으며, '전혀 아니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11.7%이다. 특히 참여와 시민권영역은 '전혀 아니다'는 의견은 55.8%로 나타나 미취학아동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미취학아동 학부모의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결과

	사례수	빈도(%)				기술통계량		성취율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 편차	문항수	%
놀이와 여가	138	11.5	37.9	49.3	1.3	4.03	2.075	7	57.5
참여와 시민권	138	55.8	34.8	8.5	0.9	-1.19	1.742	4	-29.7
안전과 보호	138	14.3	40.4	41.4	3.8	2.46	2.469	5	49.1
보건과 사회서비스	138	16.7	35.3	45.1	2.9	5.21	3.742	11	47.4
교육환경	138	3.2	18.4	73.9	4.5	14.18	2.987	17	83.4
가정환경	138	1.0	15.5	82.7	0.8	8.11	1.243	9	90.1
전체	138	11.7	27.3	58.2	2.8	32.80	9.885	53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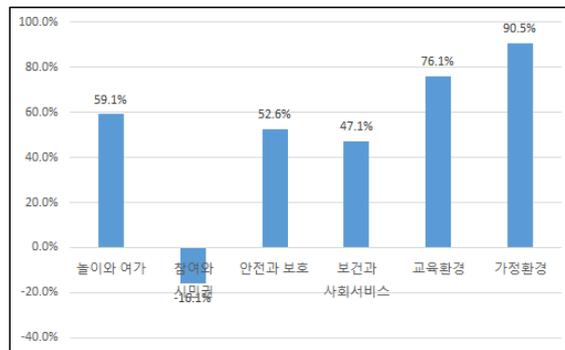
6개 영역별 평균 점수에 대한 성취율을 비교해 보면, 가정환경이 90.1%로 나타나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참여와 시민권은 -29.7%로 나타나 '아니다'는 부정의견이 '그렇다'는 긍정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미취학아동 학부모가 평가한 영역별 성취율(%)

2) 어린이 부모

어린이 학부모 대상의 65개 문항을 모두 결합한 종합의견을 보면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54.9%이며, '전혀 아니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12.5%이다. 전체 평균은 38.32점이며, 성취율은 58.9%로 평가되고 있다. 6개 영역별 평균 점수에 대한 성취율을 비교해 보면, 가정환경



[그림 2] 어린이 학부모가 평가한 영역별 성취율(%)

<표 5> 어린이 학부모의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결과

	빈도(%)	빈도(%)				기술통계량		성취율	
		사례수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 편차	문항수
놀이와 여가	94	11.2	36.3	51.1	1.4	3.54	1.844	6	59.1
참여와 시민권	94	47.9	39.2	11.3	1.6	-0.97	2.640	6	-16.1
안전과 보호	94	14.3	35.4	48.4	1.9	7.37	3.657	14	52.6
보건과 사회서비스	94	15.7	40.2	40.8	3.3	4.24	3.464	9	47.1
교육환경	94	4.6	28.4	65.0	2.1	15.98	5.581	21	76.1
가정환경	94	2.0	10.9	86.9	0.2	8.15	2.172	9	90.5
전체	94	12.5	30.8	54.9	1.8	38.32	13.244	65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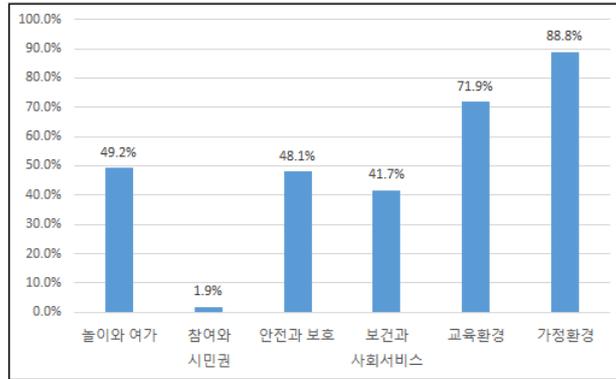
이 90.5%로 나타나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참여와 시민권은 -16.1%로 나타나 아니다는 부정의견이 그렇다는 긍정의견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부모

청소년 학부모 대상의 68개 문항을 모두 결합한 종합의견을 보면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46.3%이며, '전혀 아니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11.1%이다. 전체 평균은 38.55점이며, 성취율은 56.7%로 평가되고 있다. 6개 영역별로 보면, '매우 그렇다'와 '가끔 그렇다'를 결합한 '그렇다'는 의견은 가정환경영역이 가장 높으며, 참여와 시민권영역이 가장 낮다. 특히 참여와 시민권영역은 '전혀 아니다'는 의견은 36.9%이다. 영역별 평균 점수에 대한 성취율을 비교해 보면, 가정환경이 88.8%로 나타나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참여와 시민권은 1.9%로 나타나 그렇다는 의견이 더 많지만 아니다는 부정의견

〈표 6〉 청소년 학부모의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결과

	사례수	빈도(%)			무응답	기술통계량		성취율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문항수	%
놀이와 여가	99	12.0	52.4	34.5	1.2	2.95	2.184	6	49.2
참여와 시민권	99	36.9	44.9	16.5	1.7	0.11	2.815	6	1.9
안전과 보호	99	14.1	45.1	38.3	2.4	7.21	4.273	15	48.1
보건과 사회서비스	99	16.8	44.7	35.1	3.4	3.76	3.706	9	41.7
교육환경	99	3.7	39.5	53.6	3.2	16.53	5.046	23	71.9
가정환경	99	1.1	18.0	80.1	0.8	7.99	1.493	9	88.8
전체	99	11.1	40.2	46.3	2.4	38.55	14.359	68	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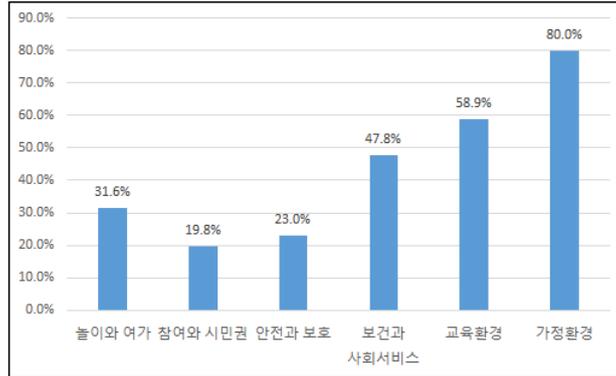
[그림 3] 청소년 학부모가 평가한 영역별 성취율(%)

과 그렇다는 긍정의견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권리옹호자

아동권리옹호자는 오산시 아동관련 직업군을 가진 전문가로서 교사, 지역 아동센터장, 도서관장, 아동 건강지원 센터장, 학부모 단체장 등이 여기에 속하는 군으로 이들의 75개 문항을 모두 결합한 종합의견을 보면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36.1%이며, '전혀 아니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15.0%이다. 전체 평균은 34.11점이며, 성취율은 45.5%로 평가되고 있다. 6개 영역별로 보면, '매우 그렇다'와 '가끔 그렇다'를 결합한 '그렇다'는 의견은 가정환경영역이 가장 높으며, 참여와 시민권영역이 가장 낮으며 안전과 보호, 놀이와 여가영역도 낮다. 특히 '참여와 시민권'영역과 '안전과 보호'영역의 '전혀 아니다'는 의견은 각각 26.2%, 24.6%이다. 영역별 평균 점수에 대한 성취율을 비교해 보면, 가정환경의 경우, 아동권리옹호자의 80% 정도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참여와 시민권은 19.8%로 나타나 그렇다는

긍정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아동권리옹호자가 평가한 영역별 성취율(%)

<표 7> 아동권리옹호자의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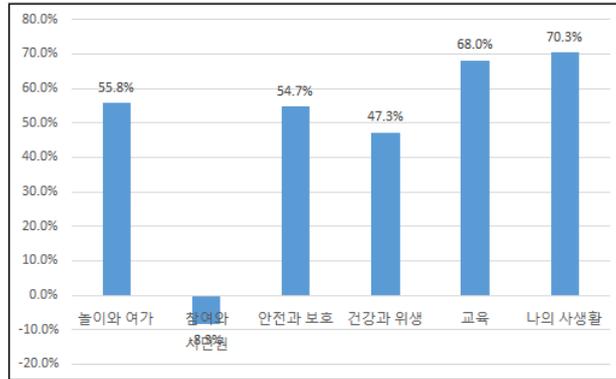
	사례수	빈도			무응답	기술통계량		성취율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문항수	%
놀이와 여가	49	19.2	58.6	20.4	1.7	2.21	3.132	7	31.6
참여와 시민권	49	26.2	53.4	19.4	1.0	1.19	2.917	6	19.8
안전과 보호	49	24.6	46.3	23.0	6.1	4.15	6.054	18	23.0
보건과 사회복지	49	15.0	43.5	39.6	1.9	5.74	4.208	12	47.8
교육환경	49	8.6	46.6	43.1	1.7	13.56	6.741	23	58.9
가정환경	49	1.4	33.6	62.8	2.3	7.20	1.741	9	80.0
전체	49	15.0	46.1	36.1	2.8	34.11	19.799	75	45.5

5) 어린이

어린이 대상의 51개 문항을 모두 결합한 종합의견을 보면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54.0%이며, '전혀 아니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13.5%이다. 전체 평균은 28.58점이며, 성취율은 56.0%로 평가되고 있다. 6개 영역별로 보면, '매우 그렇다'와 '가끔 그렇다'를 결합한 '그렇다'는 의견은 나의 사생활영역이 가장 높으며, 교육과 놀이와 여가의 순으로 높은 반면, 참여와 시민권영역이 가장 낮다. 영역별 평균 점수에 대한 성취율을 비교해 보면, 나의 사생활이 70.3%, 교육이 68.0%로 나타나 어린이들의 70%정도가 두 영역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의견이 많으며, 참여와 시민권은 -8.3%로 나타나 아니다는 부정의견이 많았다.

〈표 8〉 어린이의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결과

	빈도(%)	빈도(%)				기술통계량		성취율	
		사례수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표준 편차	문항수
놀이와 여가	145	12.8	28.9	51.3	7.1	3.35	2.172	6	55.8
참여와 시민권	145	41.4	33.5	17.2	7.9	-0.42	2.783	5	-8.3
안전과 보호	145	11.1	20.9	43.2	24.8	3.83	2.890	7	54.7
건강과 위생	145	15.8	31.9	47.4	4.9	1.89	1.942	4	47.3
교육	145	9.4	20.6	62.5	7.5	12.25	5.917	18	68.0
나의 사생활	145	9.7	14.6	69.8	5.9	7.74	3.614	11	70.3
- 우리집	145	3.5	9.0	84.8	2.7	3.48	1.048	4	87.0
- 안전과 보호	145	13.7	16.9	63.2	6.2	3.61	2.939	6	60.1
- 학교	145	10.3	23.4	51.0	15.2	0.62	0.644	1	61.8
전체	145	13.5	22.3	54.0	10.2	28.58	14.110	51	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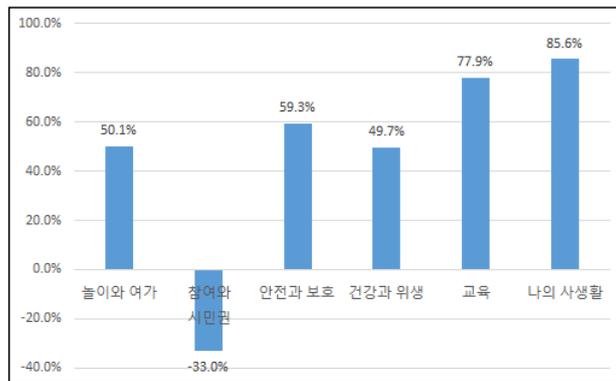
[그림 5] 어린이가 평가한 영역별 성취율(%)

6) 청소년

청소년 대상의 59개 문항을 모두 결합한 종합의견을 보면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55.5%이며, '전혀 아니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10.7%이다. 전체 평균은 36.49점이며, 성취율은 61.8%로 평가되고 있다. 6개 영역별로 보면, '매우 그렇다'와 '가끔 그렇다'를 결합한 '그렇다'는 의견은 나의 사생활영역이 가장 높으며, 교육이 그 다음으로 높은 반면, 참여와 시민권영역이 가장 낮다. 특히 참여와 시민권영역은 '전혀 아니다'는 의견은 55.7%로 나타나 청소년 자신들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와 시민권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다. 영역별 평균 점수에 대한 성취율을 비교해 보면, 나의 사생활이 85.6%, 교육이 77.9%로 나타나 청소년의 70%정도가 사생활과 교육영역에 대해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참여와 시민권은 -33.0%로 나타나 아니다는 부정의견이 그렇다는 긍정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청소년의 아동친화도시 자가평가 결과

	사례수	빈도(%)			무응답	기술통계량		성취율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문항수	%
놀이와 여가	147	12.8	44.8	38.9	3.5	3.01	1.763	6	50.1
참여와 시민권	147	55.7	34.7	6.1	3.5	-1.98	2.709	6	-33.0
안전과 보호	147	7.0	39.7	37.3	15.9	4.15	2.005	7	59.3
건강과 위생	146	13.7	44.3	40.8	1.2	1.99	1.687	4	49.7
교육	147	3.6	28.6	66.6	1.1	15.59	3.722	20	77.9
나의 사생활	147	2.9	16.1	77.9	3.1	13.70	2.809	16	85.6
- 우리집	147	1.1	9.1	88.3	1.5	4.65	0.769	5	93.0
- 안전과 보호	147	3.6	16.0	77.0	3.5	6.73	1.698	8	84.2
- 건강	143	4.5	32.2	60.8	2.4	1.49	0.741	2	74.7
- 학교	141	3.4	21.1	71.4	4.1	0.82	0.407	1	81.9
전체	147	10.7	29.9	55.5	4.0	36.49	10.119	59	61.8



[그림 6] 청소년이 평가한 영역별 성취율(%)

I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O시의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미취학, 아동, 청소년 학부모, 아동, 청소년, 아동권리옹호가 6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통계 분석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아동친화도시 실행을 위해 아동영향 평가제도가 정례화 되어야 함을 논하고자 하였다.

1. 아동의 4대 권리에 근거한 아동친화도 지표 설문조사 해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지표를 이용한 O시 아동친화도 평가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아동권리옹호가들을 제외한 모든 대상에게서 가정환경과 교육환경 이 성취율에 있어서 평균점수가 80~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의 권리에 입각하여 살펴볼 때 높은 수준의 결과이다. O시가 평균연령 30.2세로 '젊은 도시'라고 불리는 만큼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과 잘 살아가기 위한 가정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알 수 있으며 O시는 '혁신교육도시'로 지자체 중심의 질 좋은 교육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옹호가의 결과는 다소 다르다.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의 영역에서 평균 성취율도 80~58% 수준으로 타 대상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교육이 아닌 학교 밖, 아동복지 지역 센터, 양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발달권 정책이 미비하고 이들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아동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확충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결

과이다.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기반한 '가정환경', '교육환경', '놀이와 여가' 등의 환경적 기반 구축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O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소 안에 늘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장애아동의 교육이나 안전, 보호 등의 시설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한다. 즉, O시가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친화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호 및 건강과 위생서비스 인프라를 보다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O시가 설문조사에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과 발달권과 관련한 환경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한 개선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대상의 조사자 평균의 성취율이 급격히 낮게 나온 영역은 '참여와 시민권'영역이다. 특히 미취학 부모들과 청소년 성취율이 -29.7%, -33.0%로 나타나 부모나 청소년들은 O시에서 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결정에 있어서 아동들이 스스로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고 시민으로 주체적 권리를 행사 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권이 아동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항목임에도 불구하고 O시가 계획하고 행하고 있는 부서별 아동친화시책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아동의 4대 권리 중 유독 참여권을 시행하는 시책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오산시, 2016a, 2016b). 이는 아동당사자들의 직접적인 관심표명이나 참여는 매우 약한 것으로 사료되어 아동친화도시로 구축방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O시가 아동의 참여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검토와 더불어 아동참여권과 관련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2. 설문조사를 근거로 0시의 아동영향평가의 구축방향

0시는 아동의 4대 권리에 비추어 재해석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구축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특히 참여권 관련 지표가 매우 낮으므로 더욱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확산하여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영향평가(child impact assessment)란 '어떠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법령, 프로젝트나 혹은 제안 같은 것이 결국 어떤 특정한 집단의 아동이나 혹은 일반적인 모든 아동에게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전반적인 영향'(Munro, 2014)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과 관련이 있는 모든 법과 정책, 그리고 각종사업이 무엇보다 먼저 그 대상인 아동의 이익측면에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아동정책과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임은 물론 그들의 인권과 권리보장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0시의 아동영향평가는 정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들이 0시를 위한 어떠한 정책개발이나 사업시행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담당자 역시 아동에 권리에 관심을 갖고 아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가져야 한다. 0시가 아동영향평가 실시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강순원 외, 2016). 첫째, 아동영향평가가 제도로써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려면 법적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조례를 통해 아동영향평가 관련 법적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0시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항목이 없는 상황이므로 아동과 관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아동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

다. 둘째, 아동영향평가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동영향평가의 정의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혹은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이행하고 있는지, 아동영향평가 성과를 거둔 적이 있는지, 아동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족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생각과 문제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교육 없이는 아동영향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안착되기 쉽지 않다. 셋째, 아동영향평가 대상 정책과 사업에 대한 규정과 지표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외에 정책인안과 사업시행 시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고려해야 할 보편적인 아동영향평가 규정과 지표가 필요하다. 넷째, 아동영향평가 부서가 존재해야 한다. 아동영향평가는 단기적으로 또는 한정된 부서만 시행되는 평가가 아니다. 모든 정책,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며 이때 아동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현재 O시는 아동친화도시 부서나 영향평가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아동영향평가의 시행을 위해 아동친화도시부, 혹은 아동영향평가 부서를 설치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평가절차의 구성이 필요하다. 아동영향평가는 제도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고, 긍정적인 아동영향을 확대하려 하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절차 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평가, 사후평가가 각각의 정책, 사업시행부서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정책 또는 사업시행 시 이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아동에게 미치게 된 영향을 인식하고 살피어 그들의 권리를 반영한 책무성을 제고하

〈표 10〉 아동 사전 영향평가 check list 예시

정책명(사업명):

담당자:

수행기간:

구분	질문내용	답변	답변에 따른 설명	비고
법적근거 준거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이행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오산시 조례 기준의 이행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아동권리준거	4대 기본권 존중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아동의 이익 최우선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아동의견 수렴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적용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아동과 그 외 예상되는 영향력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	있음 _____ 없음 _____	영향력 정도_____	
	아동 외에 (다른 지역, 시민 등) 미치는 영향	있음 _____ 없음 _____	영향력정도_____	
기타사항	다른 사업 및 부서와의 조화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예산확보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사후영향평가 방법	양적평가_____ 질적평가_____		

〈표 11〉 아동 사후 영향평가 check list 예시

정책명(사업명):

담당자:

시행기간:

구분	질문내용	답변	답변에 따른 설명	비고
사전영향평가 준거	사전영향평가 반영여부	예 _____ 아니오_____	반영정도_____	
	사전영향평가 기록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기록사항	수행과정 기록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사후영향평가 기록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아동권리기준	아동 의견 반영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4대 기본권 존중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적용	예 _____ 아니오_____	해당사항 없음	
결과분석	결과분석 여부	있음 _____ 없음_____		
	결과분석 방법	있음 _____ 없음_____		
	결과후 권고	있음 _____ 없음_____		

여 하며 정책입안 시 사전, 사후아동영향평가를 통해 모든 시정에 아동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3. O시의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정신에 따라 아동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적절한 보육 및 교육을 차별 없이 받는 등 보편적 4대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UNICEF, 1996, 2001). 유니세프 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이 중요함을 강조 하면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책임을 갖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아동친화도시 지표에 따라 방향을 세우고 아동의 의사결정과 권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UNICEF, 2008b). 궁극적으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4대 기본권리를 중심으로 아동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과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된 도시로 이는 일시적이거나 전시적인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아동영향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동 친화적 도시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아동친화도 지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O시는 아동참여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동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이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아동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일반 위원회에 아동대표자들을 비중 있게 참여시키고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옴부즈퍼슨 제도나 아동(권리 혹은 참여)위원회나 아동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법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아동친화도시의 중요 지표

이다.

둘째, 아동들을 적극적인 민주시민으로 바라보는 장치로서 아동이 직영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아동들은 오늘날 지나친 경쟁적 풍토로 인해 놀 권리나 쉴 권리 그리고 문화적 표현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 받고 있다(강순원 외, 2011). O시는 아동들이 삶의 역동성을 느끼면서 미래를 준비해나 갈 수 있는 자유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이 지역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시는 아동친화도시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미 아동친화도시조례를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for Rights of Children)에 맞추어 제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인증사업들이 주민들의 자발성에 입각한 상향적 노력 이라기보다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추동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이 보여주기 식 행사보다는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의사와 의지가 결합된 지역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민주적 의견수렴과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넷째, 이상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O시는 보다 균형 잡힌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O시의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이것이 아동관련 국제조약이나 기준의 이행 및 위반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며, 사업실행계획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실행결

과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사후 아동영향평가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감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이 설정될 수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지역 아동인권문화를 신장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로만 이루어진 내용으로 관계자 및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없었으므로 면담 등 질적연구를 통해 다각적인 면에서 아동친화도시 구축 방향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영향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후 연구가 필요 하겠다.

참고문헌

- 강순원, 강자경, 김예랑, 이민주, 유희정, 조순영, 허영림(2011). **영유아의 마음을 여는 보육학개론**. 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 강순원, 유희정, 변종석, 권순정(2016). **아동친화도시 지표를 통해서 본 오산시 아동영향평가의 방향**. 경기: 오산시청.
- 김영한, 임영식, 김민(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서울: 한국정책연구원.
- 박금식(2014).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 필요. **부산여성가족브리프** 20. 1-8.
- 보건복지부(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604.
- 성북구청(2013).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성북 보고서**.
- 성북구청(2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오산시(2016a). **오산시 부서별 아동친화시책 총괄현황**. 경기: 오산시청.
- _____(2016b). **오산시 출산장려추진현황자료**. 경기 오산시청.
- 이옥(2012). 아동중심의 아동지표 연구. *아동과 권리* 16(1), 1-2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휴먼컬처 아리랑.
- 홍승애(2013).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 청소년 복지 전공 박사학위논문.
- Chawla, L.(2002). *Growing Up in an Urbanizing World*. London: Earthscan.
- Churchman, A.(2003). Is There a Place for Children in the City? *Journal of Urban Design*. 8(2), 99-111.
- Clark, C., Myron, R., Stansfeld, S. & Candy, B.(2007).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on the effect of the built and physical environment on mental health. *Journal of Public Mental Health*. 6(2), 14-27.
- Driskell, D.(2002). *Creating Better Cities with Children and Youth*. London: Earthscan.
- Isami Kinoshita(2014). Japanese Movements on Children's Participation and Child-friendly City, *human rights education in asia-pacific*. 13~25.
- Morrow, V.(1999). We are people too: Children's and young people's perspective on children's rights and decision-making in Engla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7(2).
- Munro, G.(2014). *Summary Paper on Children's Rights Impact Assessment in Scotland*(미간행 원고).
- UNICEF(1996). *Toward Child Friendly Cities*. New York: UNICEF.
- _____(2001). *Partnership to Create Child Friendly Cities: Programming for Child Rights with Local Authorities*. New York: UNICEF/IULA.
- _____(2008b). *Implementation Handbook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CEF.
- _____(2010).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A Facilitator's Guide*.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and Child watch International.
- UNICEF 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

Abstract

The Direction to the Child-Friendly City Infra-Building of O city Based on the Child-Friendly Assessment Tool

You, Heejung

(Hanshin University)

Kwon, Soon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g, Soon-Won

(Hanshin University)

Byun, Jong-Seok

(Hanshin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the direction to the infra-building of O city by being awarded the status of child-friendly city, in which every child matters as a subject with its own rights and opport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e research methodology is statistical analysis of questionnaires which being derived from the UNICEF's children-friendly assessment tool originally developed by UNICEF headquarter. The questionnaires are composed of four basic rights of children: Survival,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The researchers distributed questionnaires to 672 children, parents and child rights advocates of O city: preschool parents, elementary children and parents, high school children and parents, and child rights advocates. The result shows that it is relatively

stable for the rights to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but the rights to participation is very low. Therefore, O city needs to reinforce the policy of enhancing the right to participation based on children's adversary system. Also, for substantial enforcement of child-friendly city, the children impact evaluation system have to be delivered at the regularized basis.

Key words : child-friendly city, child's rights, children impact evaluation

투고신청일 : 2017. 04. 30

심사수정일 : 2017. 05. 25

게재확정일 : 2017. 06. 08